[첨부1]

(사)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

제1조 (총칙)

본 규정은 (사)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(이하 수석부회장) 선거관리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거인)

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정관 제11조(임원의 선출) ②항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3조 (후보자)

수석부회장 후보자 지원 자격은 (사)한국태양에너지학회 종신회원 및 연회비가 납부된 정회원으로 하며, 이사회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1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.
- 2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6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3.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한다.

제5조 (선거관리)

- 1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다.
- 2. 후보자는 첨부의 등록양식에 따라 3쪽 이내의 등록서류(이력서 및 공약사항)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 - 이력서(인적사항, 학력, 경력, 학회활동, 기타(연구, 수상, 봉사내용 등))
 - 소견서 및 공약사항
- 3.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.
- 4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여 공고한다.
- 5.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과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.
- 6.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선거인단에게 알리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회원에게 알린다.

제6조 (후보자 선거운동)

- 1.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2. 선거운동 기간 내 금품, 향응, 접대 등 불공정한 행위는 금지한다.

제7조 (선거)

- 1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에게 전자우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방법을 공지하다.
- 2.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한다.
- 3.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찬반 투표하다.
- 4. 투표결과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고 당일 공고한다.

제8조 (당선자의 결정)

- 1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개표관리 업무를 관장한다.
- 2. 정관 제11조(임원의 선출)에 따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에 서 승인한다.
- 3.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최다득 표자가 2인 이상이 동수일 경우 동수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4. 단독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.
- 5. 제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정한다

제9조 (규정 이외의 사항)

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